

삼일제약 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삼일제약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②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대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개최 일정은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며, 그 밖에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요건에 따라 결의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4) 재무제표의 승인
 - (5) 정관의 변경
 - (6) 자본의 감소

- 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·주식·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의 보수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이사, 이사회,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이사(무한책임사원 포함)의 겸임 승인
- (4) 이사의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5)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
- (6)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1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3)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3.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 - ① 자산총액의 5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, 처분, 양도
 - ②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신규시설투자 및 증설
 - ③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

- (2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
- (3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차입
- 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
- (5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, 유가증권의 대여
- (6) 사채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7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8) 자기주식의 소각
- (9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0) 신주의 발행
- (1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1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
- 4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2조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의사록)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5조(간사)

이사회는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 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